

## NEWSLETTER

July 2020

조세 그룹  
Tax Group

## CONTACT



변호사 마옥현

T: 02.6386.6280  
E: [okhyun.ma@leeko.com](mailto:okhyun.ma@leeko.com)

변호사 김성환

T: 02.6386.7900  
E: [sunghwan.kim@leeko.com](mailto:sunghwan.kim@leeko.com)

변호사 김경태

T: 02.772.4414  
E: [kyungtae.kim@leeko.com](mailto:kyungtae.kim@leeko.com)

변호사 박영욱

T: 02.772.4422  
E: [younguk.park@leeko.com](mailto:younguk.park@leeko.com)

## 2020년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는 2020. 7. 22.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투자·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고, 서민과 중소기업 및 일자리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며,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I.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 1.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제24조)

투자에 대한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존중하기 위하여, 지원대상과 지원수준 등이 상이한 9개 특정시설에 대한 기존의 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통합, 재설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는 일반투자보다 높은 기본공제를 적용(대기업 3% / 중견 5% / 중소기업 12%)하여 한국판 뉴딜 등 신산업 투자에 대한 지원을 우대하였습니다.

## 2. 조특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조특법 제144조)

세액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조특법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투자리스크를 경감하였습니다. 2020년말 기준 이월공제기간이 미도래한 세액공제에도 적용됩니다.

## 3.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법인세법 제13조 및 제76의13조, 소득세법 제45조)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및 사업자 세부담 경감을 하여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021년 이후 신고하는 결손금(2020년 귀속분)부터 적용됩니다.

## 4.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의 손금산입 허용 (법인세법 제57조, 소득세법 제57조)

국제거래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지원을 위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이월공제기간이 종료한 다음 과세연도에 손금산입을 허용하였습니다. 2020년말 기준 이월공제기한이 미도래한 세액공제에도 적용됩니다.

#### 5.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분류과세 도입 (소득세법 제4조 및 제87조의2, 제87조의4부터 26, 제127조부터 129조, 제148의2, 3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증권,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현재 비과세 중인 채권 양도소득,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도 단계적으로 과세 확대됩니다. 그러나 원본손실 가능성(투자성)이 없는 소득은 금융투자소득 과세 범위에서 제외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예적금, 저축성 보험, 채권 이자 및 법인 배당금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위해 필요경비 계산, 기본공제 5천만원, 세액감면 및 금융투자이월결손금 제도(5년)가 함께 신설되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금액은 과세기간(1.1~12.31) 별로 금융투자상품의 소득금액 및 손실금액을 합산하고 (1)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2)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으로 구분하여 기본공제(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5,000만 원,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250만 원)를 적용하며 5년간 이월공제가 허용될 예정입니다.

금융투자소득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하여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금융회사별로 매달 인별 소득금액 통산 후 원천징수(세율 20%)를 통해 과세합니다.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는 소득은 반기별로 예정신고해야 하며, 누진세율(25%) 적용으로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자, 손익통산으로 환급을 받으려는 자, 당해연도 결손금 확정시 필요한 자는 다음연도 5월말까지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위 규정은 2023. 1. 1. 이후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 6.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합리화 (소득세법 제 4조 및 제17조, 조특법 제91조의2)

집합투자기구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집합투자기구 소득과 과세대상 소득을 일치시켜 불완전과세 및 손실과세의 문제를 해소하였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분배금은 소득원천에 따라 배당소득과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적격 집합투자기구에 도관과세를 적용하여 금융투자소득 손익통산·이월공제를 허용하고, 비적격 집합투자기구는 경제적 실질에 맞게 법인과세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상 적격 집합투자기구 요건에 국세청에 매년 신탁재산 소득금액, 분배금, 유보금 내역을 신고하는 것이 추가되었으며, 비적격집합투자기구가 이자·배당소득 등을 분배하지 않아 과세가 이연되는 경우 그 이연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하며 그 수익자에게는 배당소득이 과세됩니다.

#### 7. 증권거래세 인하 (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금융투자소득 도입 및 주식양도소득 과세확대에 맞추어 세수 중립을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였습니다. 단계적으로, 2021~2022년에는 현행보다 0.02%p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되고, 금융투자소득이 전면 시행되는 2023년에는 코스피 0%, 코스닥 0.15%, 코넥스, 0.1%, 기타 0.35%의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8.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 다양화 (소득세법 제2의3 신설, 법인세법 제5조 등)

신탁의 종류·유형에 따라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다양화하여 신탁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탁자의 조세회피를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과세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형                | 납세의무자                 | 대상 신탁   | 과세방식   |
|-------------------|-----------------------|---|--|
| 수익자<br>과세         | 수익자                   | 원칙(일반적인 경우)   | 소득원천별 과세   |
| 위탁자<br>과세         | 위탁자                   | 실질적 수익자가<br>위탁자인 경우<br>* 수익자가 없는 경우,<br>위탁자가 신탁을<br>통제·지배하는<br>경우로서 시행령으로<br>정하는 경우 등 | 소득원천별 과세   |
| 신탁재산<br>법인세<br>과세 | 1단계: 신탁재산<br>2단계: 수익자 | 수익증권발행신탁,<br>목적신탁 등 중<br>수탁자가 선택하는 경우<br>(위탁자가<br>통제·지배하는 경우<br>제외)                   | <b>2단계 과세</b><br>1) 신탁재산에 대해<br>법인세 과세<br>2) 수익자에게 배분시<br>배당소득세 과세<br>* 既납부 법인세<br>이중과세 조정 |

한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배당소득공제를 신설하였고(법인세법 제18조의2, 3, 동법 제75의13),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외국납부세액은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이 적용됩니다(법인세법 제57의2). 신탁 관련 개정 규정은 202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 9. 신탁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전환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제10조)

부가가치세과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신탁재산 관련 거래의 계약당사자인 수탁자로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위탁자가 거래당사자가 되거나 실질적으로 신탁재산을 지배·통제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탁자의 납세의무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으로 거래당사자 인식이 쉬워지고 세금계산서 수수 등이 명확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10. 신탁 관련 상속·증여세 과세 명확화 및 관련 규정 보완 (상증세법 제2조, 제9조, 소득세법 제88조, 제94조)

유연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위탁자 또는 수익자 사망시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로 과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 사망시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유연대용신탁”은 유증·사인증여와 유사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는 “수익자연속신탁”은 각 수익자에 귀속될 수익권의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 11. 신탁관련 종합부동산세 회피 방지 (증부세법 제7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여, 신탁한 부동산을 위탁자의 다른 재산과 합산하여 과세함으로써 신탁을 활용한 종합부동산세 회피를 방지하여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위 개정규정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됩니다.

## II.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 12.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소득세법 제55①)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 2021.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표준 10억 초과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상향하였습니다.

### 13. 주택분 종부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신설 (종부세법 제9조)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주택분 종부세율을 인상하였으며,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일반세율

|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       |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       |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3억 원 이하                  | 0.6   | 3억 원 이하           | 1.2   |
| 3 ~ 6억 원 이하              | 0.8   | 3 ~ 6억 원 이하       | 1.6   |
| 6 ~ 12억 원 이하             | 1.2   | 6 ~ 12억 원 이하      | 2.2   |
| 12 ~ 50억 원 이하            | 1.6   | 12 ~ 50억 원 이하     | 3.6   |
| 50 ~ 94억 원 이하            | 2.2   | 50 ~ 94억 원 이하     | 5.0   |
| 94억 원 초과                 | 3.0   | 94억 원 초과          | 6.0   |

법인(종부세를 부과하는 목적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에 대한 종과세율은 2주택 이하 법인은 3.0%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6.0%를 적용합니다.

### 14.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제14조, 제21조, 제119조 등 및 법인세법 제92조, 제93조, 제98조등)

소득세법상 열거되지 않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세되어 오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되,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분리과세됩니다. 위 개정규정은 2021. 10. 1. 이후 양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가. 거주자의 국내 가상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방법

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가상자산 소득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며,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계산하고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 원 이하는 비과세됩니다. 또한 종합과세 대상에서는 제외하여 별도로 분리과세로 20% 세율로 과세됩니다.

#### 나.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 가상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방법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며,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매달 양도가액의 10%, 양도차익의 20% 중 작은 값을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조세조약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15.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포함 (국조법 제34조 제2항, 제3항)

거주자의 해외 가상자산 투자 관련 세원정보 확보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및 그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III.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 16.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 (조특법 § 104의33조)

최대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개인 유사법인, 사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시행령에서 적용을 배제하도록 열거한 법인은 제외)의 경우, 적정 수준을 초과한 유보소득(초과 유보소득)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배당간주금액)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 유사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에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배당간주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복과세 조정을 위해 향후 배당간주금액을 실제 배당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 17.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CFC)에서 수동소득 범위 확대 (국조법 § 17의3조)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수동소득이 일정규모 이상인 특정외국법인은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 수동소득에 대해 CFC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때 수동소득이란 주식·채권의 보유, 지식재산권의 제공,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투자신탁·기금에 대한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데, 수동소득 범위에 주식·채권 보유 등에 따른 소득(예: 이자·배당소득) 외에 해당 자산의 매각에 따른 소득도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 18. 특수관계자 입증책임 전환 및 제1방법 적용배제 (관세법 제30조 제4항, 제5항, 제37조의4 제6항, 제7항)

다국적기업 본사와 한국 지사 등 특수관계 법인이 정확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촉진하고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입증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세관장의 자료제출 요구 사유를 확대하고,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를 수입신고가격의 거래가격(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중 ‘제1방법’) 배제사유로 명문화하였습니다. 현행법과 개정법안의 주요 사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가격 배제사유       |  |
|-----------------|--|
| 현행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세의무자가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되지 않게 작성된 경우</li> <li>■ 자료가 제출되었음에도 신고가격의 정확성·진실성에 여전히 합리적 의심이 존재하는 경우</li> </ul> |
| 개정안<br>[추가된 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관계자가 신고가격이 해당 산업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부합하는 거래가격임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li> </ul>   |

| 특수관계자 과세자료 제출 요구 사유 |   |
|---------------------|---|
| 현행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가격이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등</li> </ul>  |
| 개정안<br>[개정, 추가된 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가격이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b>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차이</b>가 존재하는 경우</li> <li>■ 거래가격에 판매자의 비용·이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경우</li> <li>■ 신고가격이 해당산업의 정상적인 가격 결정관행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 등</li> </ul> |

개정법 시행 이후 이루어지는 특수관계자의 기업심사 자료 준비 과정에서 난도가 큰폭으로 증가하고 세관의 심사·처분 행정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 개정사항은 2021. 1. 1. 이후 과세자료 제출요청년부터 적용됩니다.

### 19. 특수관계자 자료제출 불이행에 대해 2억원이하 과태료 추가 (관세법 제277조 제1항)

현행법은 특수관계자가 세관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자료제출 의무 이행의 정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위의 과태료가 부과된 다음에도 자료제출 등 시정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여 최대 2억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본 개정사항은 2021. 1. 1. 이후 1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20.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다만, 특수관계자 과태료처분 받은 경우는 배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수입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 필요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를 ‘세관장이 결정·경정하거나 수입자가 세관장이 결정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세관장이 결정·경정하거나 수입자가 세관장이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심사 등으로 인한 세액추징 시에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비율이 증가하여 기업의 실질적 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개정법에 의하더라도 특수관계자의 자료 제출 의무 불이행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관세법상 세액 관련 범죄로 처벌된 경우 및 허위 서류 작성·자료 파기 등 관세법상 부당한 방법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을 저가신고한 경우 등의 예외에 해당하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된다는 점에 유념하여야 합니다.

본 개정사항은 2021. 1. 1.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21. 무관세물품에 대한 가산세부과 (관세법 제42조, 제42조의2)

수입물품의 기본세율 또는 적용받는 특혜세율이 0%이거나 관세가 면제된 경우, 즉 납부할 관세가 없더라도,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자에게 제재 의미로서 부과할 가산세를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가산세 부과 및 가산세 감면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 가산세 부과액 산정 방식                      | 가산세 감면율·감면사유                                      |
|---------------------|------------------------------------|---|
| <b>과세표준이 가격인 물품</b> | 1) 과소신고한 경우<br>과세표준 누락분×0.8%       | 1) 100% 감면<br>수입신고 수리전 수정 신고한 경우, 잠정가격 신고를 한 경우 등 |
|                     | 2) 신고하지 않은 경우<br>과세표준 누락분×1.6%     |   |
|                     | 3) 부정행위를 한 경우<br>과세표준 누락분×3.2%     |   |
| <b>과세표준이 수량인 물품</b> | 1) 과소신고한 경우<br>과세표준 누락분×기본세율×10%   | 2) 10~20% 감면<br>보정기간 후 1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
|                     | 2) 신고하지 않은 경우<br>과세표준 누락분×기본세율×20% |   |
|                     | 3) 부정행위를 한 경우<br>과세표준 누락분×기본세율×40% |   |

본 개정사항은 2021. 1. 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22. 품목분류사전심사결과 등 유효기간 연장 (관세법 제86조 제7항, 제87조 제5항)

기존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내지 재심사 등으로 변경된 품목분류 결과의 유효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었으나, 예측 가능한 관세행정 및 납세자보호 견지에서 변경(변경건의 경우, 재변경) 전까지 유효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사항은 2021. 1. 1.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 23. 원산지검증요청 관련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범위 적정화 (관세법 제21조 제2항)

양허세율 적용을 위하여 상대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한 경우에 부과제척기간이 기존에는 아국이 회신을 받은 날부터 1년까지였으나, 회신을 받은 날과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까지로 개정되었습니다. 본 개정사항은 2021. 1. 1. 이후 원산지 검증 회신기간이 종료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24. 모든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 관세율 인하 (관세법 별표)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 관세율이 액압식, 공기압식은 3%, 전기식 등 기타는 8%였으나, 모든 반도체 제조용 유량 조절기에 일관된 3%의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본 개정사항은 2021. 1. 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25. 통관보류 제도 보완 (관세법 제237조)

통관보류 사유에 조약과 국제법규 위반을 추가하여 실효성을 강화하고, 세관장의 화주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 대한 통지 및 조치 이행 요구, 화주 등의 통관보류 해제 요청 등 통관보류 절차를 체계화하여 납세자 권익보호도 충실히 하였습니다. 본 개정사항은 2021. 1. 1. 이후 통관을 보류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IV. 기타

### 26. PFV 소득공제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법인세법 제51의2조 폐지, 조특법 제104의32조 신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EF)의 지급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기존 법인세법에서 일몰기간 없이 허용하여 왔으나, 조세특례의 성격을 감안하여 조특법으로 이관되었으며, 적용기한은 2022. 12. 31.까지입니다.

### 27.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소급적용기간 확대 (국조법 제6조)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2021. 1. 1. 이후 최초로 Advance Pricing Agreement(‘APA’)를 신청하는 분부터 쌍방 APA는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일방APA는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소급적용 허용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 28. 외국납부세액공제 상 손금산입 방식 폐지 (법인세법 제57조, 소득세법 제57조)

익금산입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과 손금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을 명확히 하였으며, 손금산입방식은 폐지되었습니다.

### 29. 외국법인·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개선 (법인세법 제120의2, 소득세법 제164의2)

주식상장시 기발행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발행법인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 30. 재수출감면 대상 확대 (관세법 제98조 제1항, 관세법 시행규칙 제52조)

수출을 촉진하고자 재수출감면 대상이 수출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 상대방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제공하는 물품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수출·무역을 중점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체의 감면세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개정사항은 2021. 1. 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기타 상세한 개정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조식\) 20년 세법개정안.pdf](#)



[\(상세본\) 20년 세법개정안.pdf](#)



[\(문답자료\) 20년 세법개정안.pdf](#)

■ 주요 구성원

| 조세쟁송  | 조세자문   | 국제조세  | 세무조사 지원   | 고문  |
|---|--|---|---|---|
| <p><b>이상기 변호사</b><br/>기획재정부 고문변호사<br/>한국조세협회 부이사장<br/>Tel: 02-2191-3005<br/>Mail: <a href="mailto:sangkie.lee@leeko.com">sangkie.lee@leeko.com</a></p> <p><b>이인형 변호사</b><br/>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br/>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br/>Tel: 02-772-5990<br/>Mail: <a href="mailto:inhyung.lee2@leeko.com">inhyung.lee2@leeko.com</a></p> <p><b>손병준 변호사</b><br/>대법원 조세전담 재판연구관<br/>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br/>Tel: 02-772-4420<br/>Mail: <a href="mailto:byeongjun.son@leeko.com">byeongjun.son@leeko.com</a></p> <p><b>마옥현 변호사</b><br/>대법원 조세전담 재판연구관<br/>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br/>Tel: 02-6386-6280<br/>Mail: <a href="mailto:okhyun.ma@leeko.com">okhyun.ma@leeko.com</a></p> <p><b>김성환 변호사</b><br/>대법원 조세전담재판연구관(총괄)<br/>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br/>Tel: 02-6386-7900<br/>Mail: <a href="mailto:sunghwan.kim@leeko.com">sunghwan.kim@leeko.com</a></p> <p><b>김경태 변호사</b><br/>대전지방법원 판사<br/>한국세무학회 부학회장<br/>Tel: 02-772-4414<br/>Mail: <a href="mailto:kyungtae.kim@leeko.com">kyungtae.kim@leeko.com</a></p> <p><b>박영욱 변호사</b><br/>국세청 과세품질혁신위원회 위원<br/>변호사시험(조세법) 출제위원<br/>Tel: 02-722-4422<br/>Mail: <a href="mailto:younguk.park@leeko.com">younguk.park@leeko.com</a></p> <p><b>임수혁 변호사</b><br/>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br/>미국 UC Berkeley School of Law 법학석사(LLM)<br/>Tel: 02-772-4973<br/>Mail: <a href="mailto:soohyuk.yim@leeko.com">soohyuk.yim@leeko.com</a></p> | <p><b>김상훈 변호사</b><br/>한국지방세연구원<br/>지방세구제업무 자문위원<br/>중부세무서 국제심사위원회 위원<br/>Tel: 02-772-4425<br/>Mail: <a href="mailto:sanghoon.kim@leeko.com">sanghoon.kim@leeko.com</a></p> <p><b>장연호 회계사</b><br/>국세청 금융업 실무과정 강사<br/>삼일회계법인<br/>금융/보험조세팀 근무<br/>(한국·미국 등록 회계사)<br/>Tel: 02-772-5942<br/>Mail: <a href="mailto:yeonho.chang@leeko.com">yeonho.chang@leeko.com</a></p> <p><b>이인수 회계사</b><br/>김·장 법률사무소<br/>삼일회계법인<br/>Tel: 02-6386-7905<br/>Mail: <a href="mailto:insu.lee@leeko.com">insu.lee@leeko.com</a></p> <p><b>정재훈 회계사</b><br/>신한금융지주<br/>삼일회계법인<br/>Tel: 02-772-5931<br/>Mail: <a href="mailto:jaehun.jeong@leeko.com">jaehun.jeong@leeko.com</a></p> | <p><b>심재진 미국변호사</b><br/>AmCham Tax Committee<br/>Co-Chiar<br/>PwC Moscow and Price<br/>Waterhouse, New York<br/>Tel: 02-2191-3235<br/>Mail: <a href="mailto:jay.shim@leeko.com">jay.shim@leeko.com</a></p> <p><b>류성현 변호사</b><br/>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br/>위원<br/>서울지방국세청 사무관<br/>Tel: 02-2191-3251<br/>Mail: <a href="mailto:sunghyun.ryu@leeko.com">sunghyun.ryu@leeko.com</a></p> <p><b>이현구 변호사</b><br/>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br/>UCLA Law School<br/>LLM(Tax track)<br/>Tel: 02-772-4307<br/>Mail: <a href="mailto:hoanku.lee@leeko.com">hoanku.lee@leeko.com</a></p> <p><b>오혁 미국변호사</b><br/>미국 RSM International<br/>Inc., International Tax<br/>미국 Deloitte Tax LLP,<br/>Washington National Tax<br/>Tel: 02-772-4349<br/>Mail: <a href="mailto:steve.oh@leeko.com">steve.oh@leeko.com</a></p> <p><b>권오혁 미국변호사</b><br/>Deloitte Anjin LLC<br/>Deloitte Tax LLP<br/>Tel: 02-6386-6627<br/>Mail: <a href="mailto:tom.kwon@leeko.com">tom.kwon@leeko.com</a></p> <p><b>인병춘 회계사</b><br/>KPMG 국제조세본부장<br/>KPMG Tax Partner<br/>Tel: 02-6386-7844<br/>Mail: <a href="mailto:byungchoon.ihn@leeko.com">byungchoon.ihn@leeko.com</a></p> <p><b>김태경 회계사</b><br/>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br/>한국조세연구포럼 이사<br/>Tel: 02-2191-3246<br/>Mail: <a href="mailto:ted.kim@leeko.com">ted.kim@leeko.com</a></p> <p><b>박성한 미국회계사</b><br/>EY한영회계법인<br/>삼일회계법인<br/>Tel: 02-6386-7952</p> | <p><b>조태복 세무사</b><br/>성동, 중부산 세무서장<br/>국세청 법인세과, 법령해석과<br/>Tel: 02-6386-6572<br/>Mail: <a href="mailto:taibog.cho@leeko.com">taibog.cho@leeko.com</a></p> <p><b>장순남 세무사</b><br/>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br/>서기관<br/>국세청 조사국 사무관<br/>Tel: 02-772-5928<br/>Mail: <a href="mailto:soonnam.jang@leeko.com">soonnam.jang@leeko.com</a></p> <p><b>이호태 세무사</b><br/>중부지방국세청<br/>국세청<br/>Tel: 02-6386-6602<br/>Mail: <a href="mailto:hotaee.lee@leeko.com">hotaee.lee@leeko.com</a></p> <p><b>배인수 세무사</b><br/>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br/>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br/>Tel: 02-772-5986<br/>Mail: <a href="mailto:insoo.bae@leeko.com">insoo.bae@leeko.com</a></p> | <p><b>정병춘 고문</b><br/>국세청 차장<br/>광주지방국세청장<br/>Tel: 02-722-4757<br/>Mail: <a href="mailto:byungchoon.chung@leeko.com">byungchoon.chung@leeko.com</a></p> <p><b>윤영선 고문</b><br/>제24대 관세청장<br/>기획재정부 세제실장<br/>Tel: 02-6386-6640<br/>Mail: <a href="mailto:yoonsun.yoon@leeko.com">yoonsun.yoon@leeko.com</a></p> <p><b>원정희 고문</b><br/>부산지방국세청장<br/>국세청조사국장<br/>Tel: 02-772-5942<br/>Mail: <a href="mailto:junghee.won@leeko.com">junghee.won@leeko.com</a></p> <p><b>김재욱 고문</b><br/>서울지방국세청장<br/>중부지방국세청장<br/>Tel: 02-6386-7890<br/>Mail: <a href="mailto:jaiwoung.kim@leeko.com">jaiwoung.kim@leeko.com</a></p> |
|   |  |   | <p><b>관세</b></p> <p><b>박영기 변호사</b><br/>관세청 통관지원국 사무관<br/>서울본부세관 고문변호사<br/>Tel: 02-2191-3052<br/>Mail: <a href="mailto:younggee.park@leeko.com">younggee.park@leeko.com</a></p> <p><b>태정욱 변호사</b><br/>관세청 관세평가자문위원<br/>서울본부세관 관세심사위원<br/>Tel: 02-6386-6373<br/>Mail: <a href="mailto:jungwook.tae@leeko.com">jungwook.tae@leeko.com</a></p>  | <p><b>형사</b></p> <p><b>유재만 변호사</b><br/>대검찰청 중수1,2과장<br/>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br/>특수1,2,3부장<br/>Tel: 02-772-5980<br/>Mail: <a href="mailto:jaeman.yu@leeko.com">jaeman.yu@leeko.com</a></p>  |
|   | <p><b>조세예규<br/>및<br/>행정심판</b></p> <p><b>강지현 변호사</b><br/>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br/>사무관<br/>기획재정부 세제실 사무관<br/>(조세특례제도과)<br/>Tel: 02-772-4975<br/>Mail: <a href="mailto:jihyun.kang@leeko.com">jihyun.kang@leeko.com</a></p> <p><b>김병준 세무사</b><br/>조세심판원 조정팀장<br/>국세청 심사과<br/>Tel: 02-6386-6376<br/>Mail: <a href="mailto:byungjun.kim@leeko.com">byungjun.kim@leeko.com</a></p>  |   | <p><b>지방세</b></p> <p><b>김해철 전문위원</b><br/>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br/>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br/>전문상담위원<br/>Tel: 02-772-4354<br/>Mail: <a href="mailto:haichoul.kim@leeko.com">haichoul.kim@leeko.com</a></p>   | <p><b>감사원</b></p> <p><b>이세열 고문</b><br/>감사원 심사담당과장<br/>감사원 조세담당국<br/>인사운영팀장<br/>Tel: 02-6386-7840<br/>Mail: <a href="mailto:seyou.lee@leeko.com">seyou.lee@leeko.com</a></p>   |

이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